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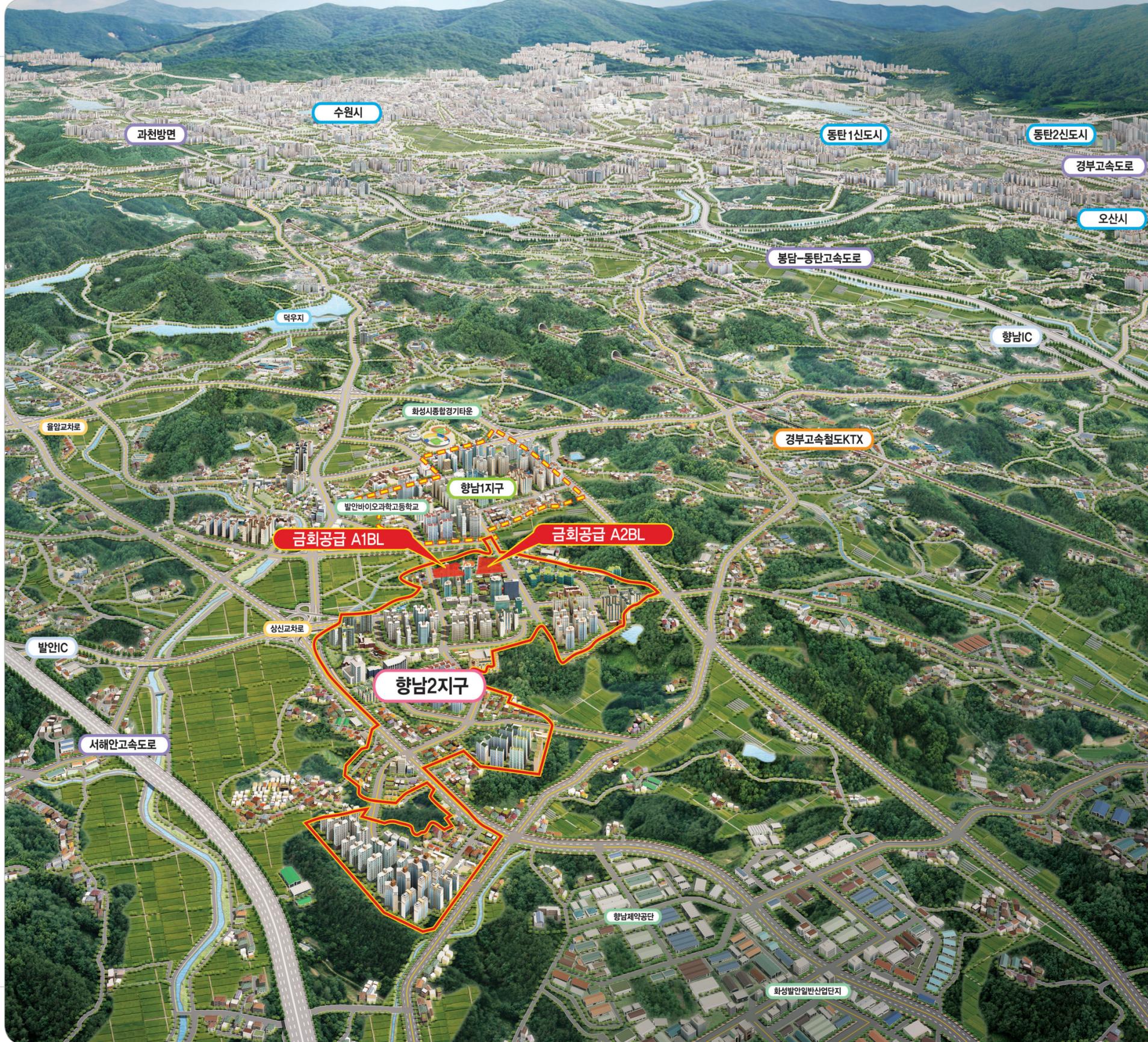


이제, 내 집처럼 사세요! 화성향남2 국민임대아파트

도시의 편리함과 생활의 쾌적함이 만나 아이와 아내의 웃음소리가 커지는,
당신에게 꼭 맞는 생활이 시작됩니다

Contents

04_ 지역조감도 / 교통망도 06_ 토지이용계획도 08_ A1블록 단지조감도 / 단지배치도 10_ A2블록 단지조감도 / 단지배치도
12_ 세대평면 26형 14_ 세대평면 36형 16_ 세대평면 46형 18_ 세대평면 51형 20_ 동호배치도 22_ 주요마감재 시설내역 23_ 입주자 모집공고



인근 산업단지는 물론 서울·수도권 및 중부권으로 5개의 고속도로가 빠르게 연결되어 삶의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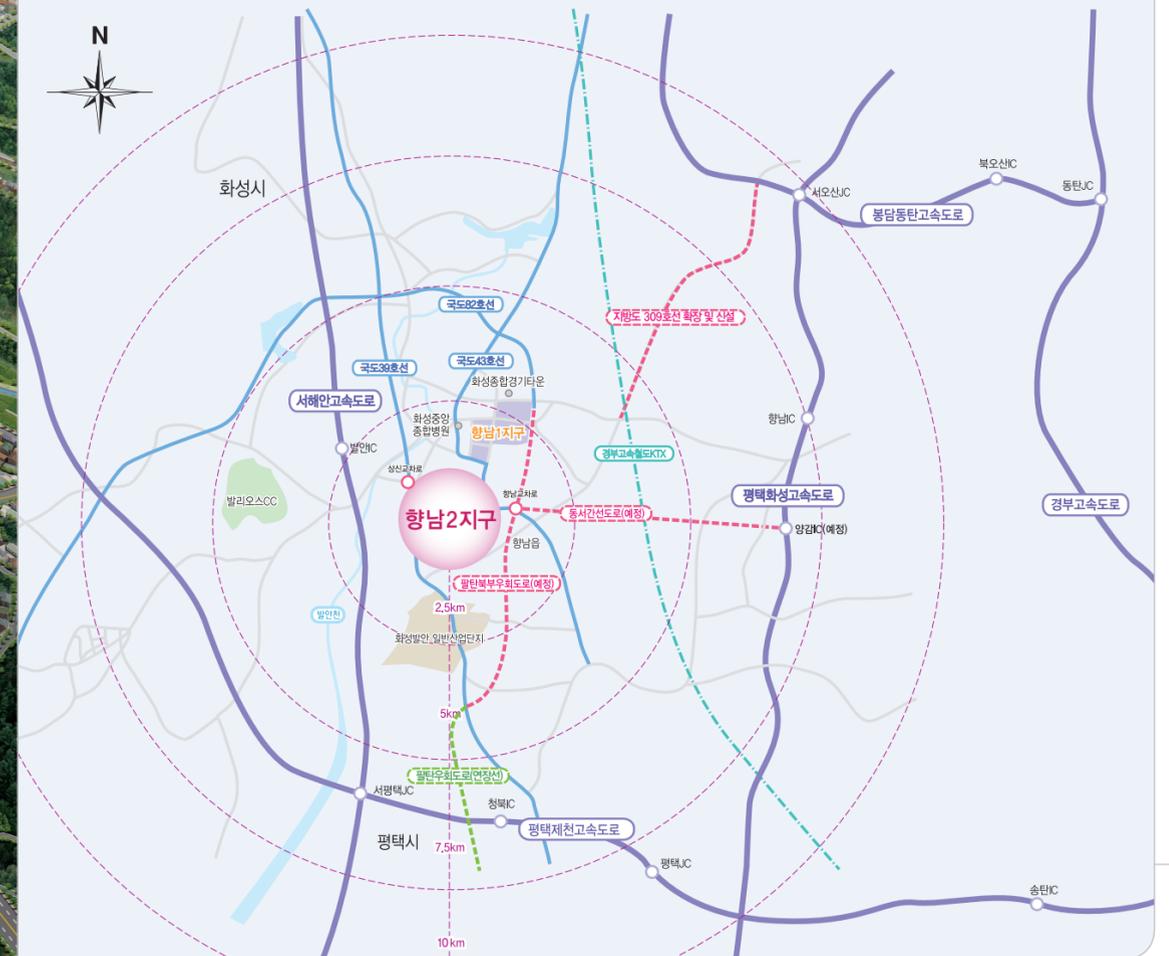
서울진입은 물론 향남제약공단, 발안지방산업단지, 현대기아자동차 주행시험장 및 연구소, 기아자동차 공장 등 지구 인근에 13개의 산업단지 출퇴근이 편리해집니다

화성향남에서 누리는 편리한 신생활과 쾌속교통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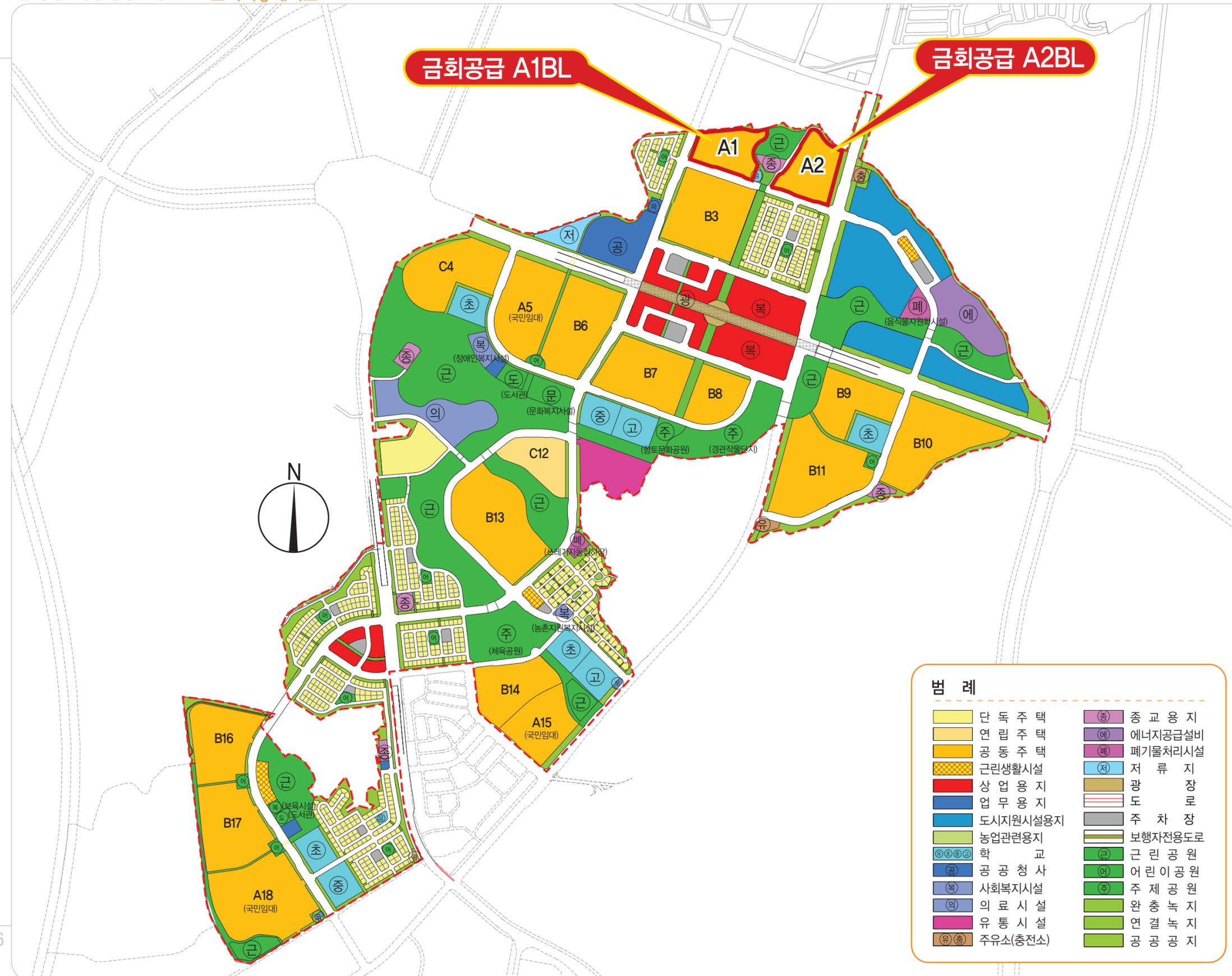
고속도로 _ 동서간고속도로(2015년 개통예정), 경부고속도로 20분대 접근, 서해안고속도로, 제2서해안고속도로, 평택~시흥 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접근이 편리합니다.

일반국도 _ 단지주변에 39번 국도, 82번 국도, 43번 국도가 인접해 있습니다

생활편의시설 _ 이미 완비된 화성향남1지구의 대형마트, 병원 등 풍부한 생활문화 인프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 상기 지역조감도 및 교통망도는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화성향남신도시는 서남부 개발축의
거점도시로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자족도시로 성장합니다

화성향남2지구 택지개발 사업개요

-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상신리, 방축리 일원
- ▶ 면적 : 3,190,000㎡(97만평)
- ▶ 수용인구 : 44,641인(16,536호)
- ▶ 사업기간 : 2006. 8~2014. 12(예정)

※ 상기 토지이용계획도는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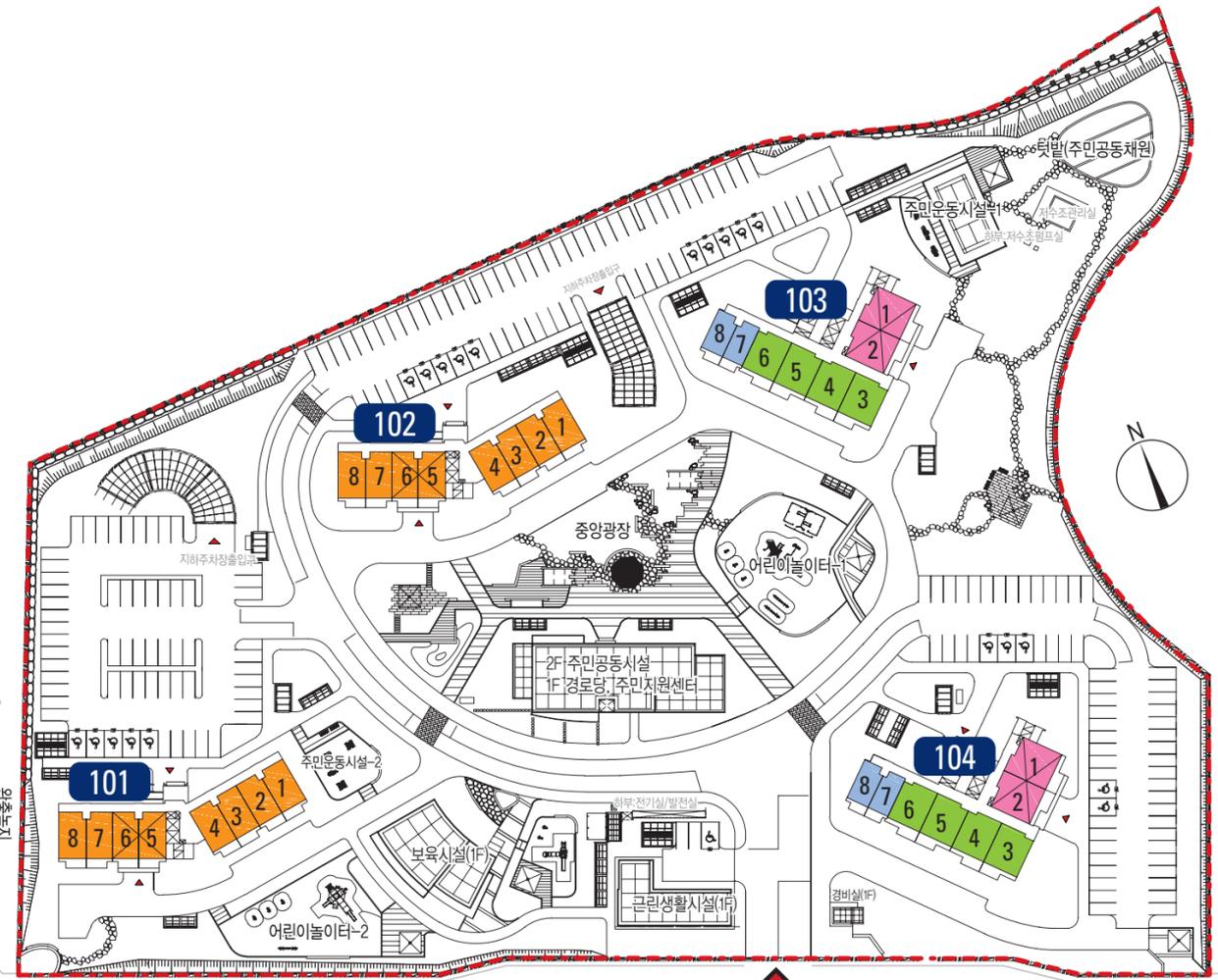
A1 블록

생활의 만족이 늘어납니다! 삶의 기대치가 높아집니다!



- | 쾌적한 단지설계 | 채광, 통풍, 조망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단지배치로 자연과 더욱 가까워집니다
- | 주민운동시설 | 입주민의 건강 증진과 친목도모, 각종 문화활동을 돕는 다목적 운동공간입니다
- | 주민공동시설 | 입주민 모두가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됩니다
- | 입주민휴게소 | 입주민 중심의 휴게시설로 푸른 자연의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편의시설, 녹지율 높은 친환경 단지설계 -
서해안 주거의 중심이 이동합니다



범례

- 자전거보관소
- 옥외 쓰레기수거함

화성향남2지구 A1블록
총 544호 4개동

26형	78호	46형	156호
36형	240호	51형	70호

* 상기 단지조감도 및 단지배치도는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A2 블록

일상의 생활이 휴식이 됩니다! 가족의 웃음소리가 커집니다!



- | 쾌적한 단지설계 | 채광, 통풍, 조망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단지배치로 자연과 더욱 가까워집니다
- | 주민운동시설 | 입주민의 건강 증진과 친목도모, 각종 문화활동을 돕는 다목적 운동공간입니다
- | 주민공동시설 | 입주민 모두가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됩니다
- | 입주민휴게소 | 입주민 중심의 휴게시설로 푸른 자연의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생활의 여유를 드리는 문화 커뮤니티-
건강한 만남과 휴식이 함께 합니다



화성향남2지구 A2블록
총 704호 5개동

26형	118호	46형	156호
36형	322호	51형	108호

26형

A1블록 78호

A2블록 118호

세대면적

전용면적	26.5500 m ²
주거공용면적	13.4010 m ²
공급면적	39.9510 m ²
기타공용면적	1.8247 m ²
지하주차장면적	8.7451 m ²
계약면적	50.5208 m ²

실별면적

거실 / 침실	10.26 m ²
주방 / 식당	11.00 m ²
욕실	3.02 m ²
반침	0.95 m ²
현관	1.32 m ²
계	26.55 m ²

발코니면적

발코니	5.95 m ²
-----	---------------------

세대면적

전용면적	26.5500 m ²
주거공용면적	13.4581 m ²
공급면적	40.0081 m ²
기타공용면적	1.6631 m ²
지하주차장면적	8.8801 m ²
계약면적	50.5513 m ²

실별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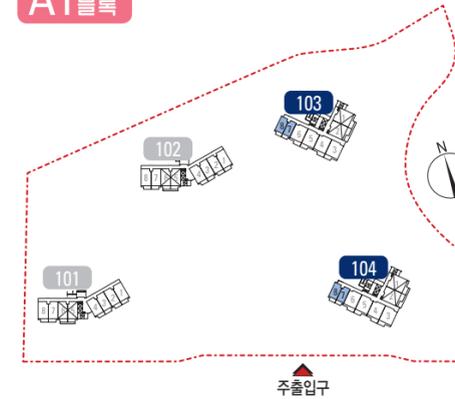
거실 / 침실	10.26 m ²
주방 / 식당	11.00 m ²
욕실	3.02 m ²
반침	0.95 m ²
현관	1.32 m ²
계	26.55 m ²

발코니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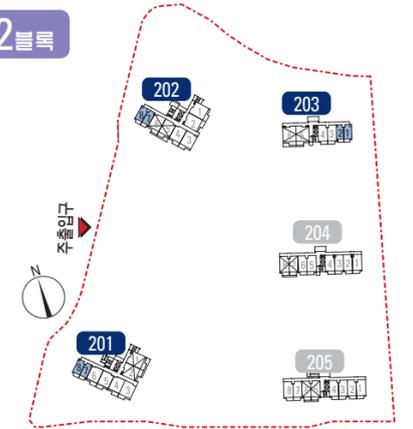
발코니	5.95 m ²
-----	---------------------



A1블록



A2블록



- 본 팸플릿에 표시된 평면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면적 및 마감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팸플릿(평면도)에 표시된 복도의 형태는 일부 타입에 국한된 것이며, 복도의 형태(너비)는 타입별(판상형, 탑상형 등)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치수는 이해를 돕기위한 참고수치입니다.(평면도상의 수치는 벽체중심선 기준이며 발코니는 벽체외부 끝선 기준임)

36형



A1블록 240호

A2블록 322호

세대면적

전용면적	36.7700 m ²
주거공용면적	18.5595 m ²
공급면적	55.3295 m ²
기타공용면적	2.5271 m ²
지하주차장면적	12.1114 m ²
계약면적	69.9680 m ²

실별면적

거실	12.88 m ²
침실 1	7.00 m ²
주방/식당	12.12 m ²
욕실	3.15 m ²
현관	1.62 m ²
계	36.77 m ²

발코니면적

발코니	7.11 m ²
-----	---------------------

세대면적

전용면적	36.7700 m ²
주거공용면적	18.6385 m ²
공급면적	55.4085 m ²
기타공용면적	2.3034 m ²
지하주차장면적	12.2984 m ²
계약면적	70.0103 m ²

실별면적

거실	12.88 m ²
침실 1	7.00 m ²
주방/식당	12.12 m ²
욕실	3.15 m ²
현관	1.62 m ²
계	36.77 m ²

발코니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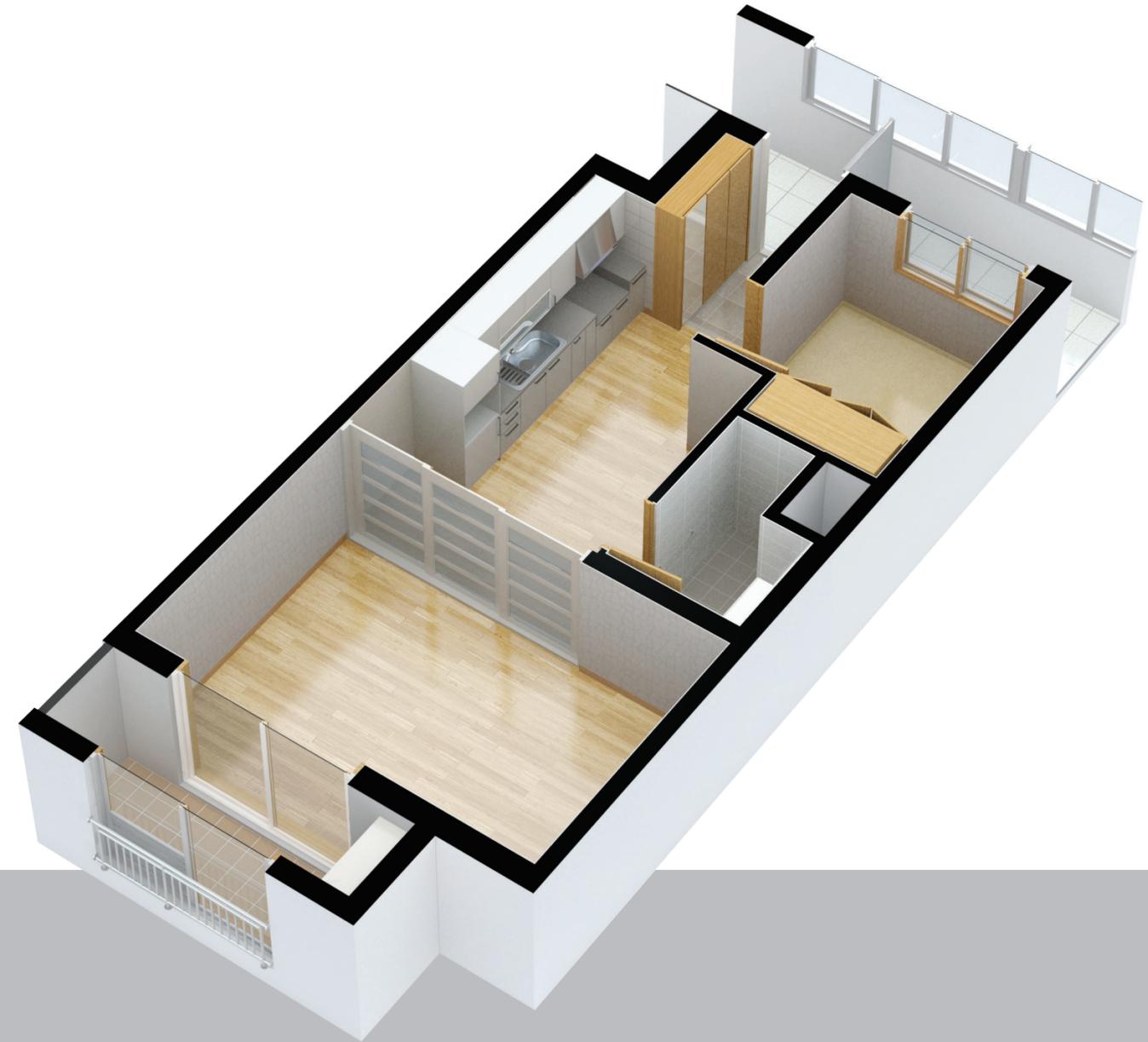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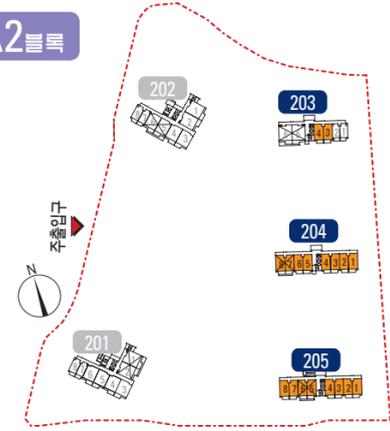
발코니	7.11 m ²
-----	---------------------



A1블록



A2블록



- 본 팸플릿에 표시된 평면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면적 및 마감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팸플릿(평면도)에 표시된 복도의 형태는 일부 타입에 국한된 것이며, 복도의 형태(너비)는 타입별(판상형, 탑상형 등)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치수는 이해를 돕기위한 참고수치입니다.(평면도상의 수치는 벽체중심선 기준이며 발코니는 벽체외부 끝선 기준임)

46형

A1블록 156호

A2블록 156호

세대면적

전용면적	46.4200 m ²
주거공용면적	23.4303 m ²
공급면적	69.8503 m ²
기타공용면적	3.1903 m ²
지하주차장면적	15.2899 m ²
계약면적	88.3305 m ²

실별면적

거실	7.75 m ²
침실 1	8.00 m ²
침실 2	9.72 m ²
주방/식당	15.99 m ²
욕실	3.40 m ²
현관	1.56 m ²
계	46.42 m ²

발코니면적

발코니	9.74 m ²
-----	---------------------

세대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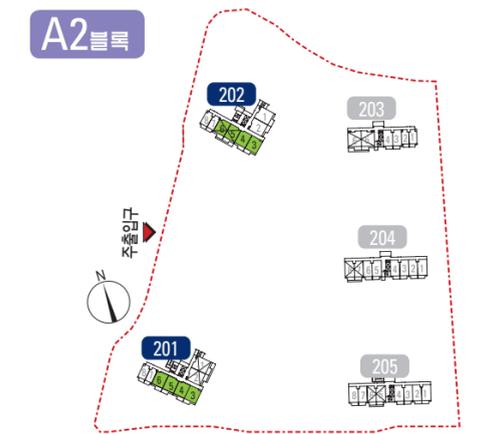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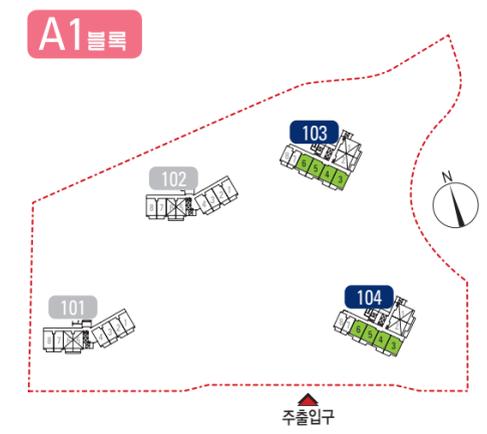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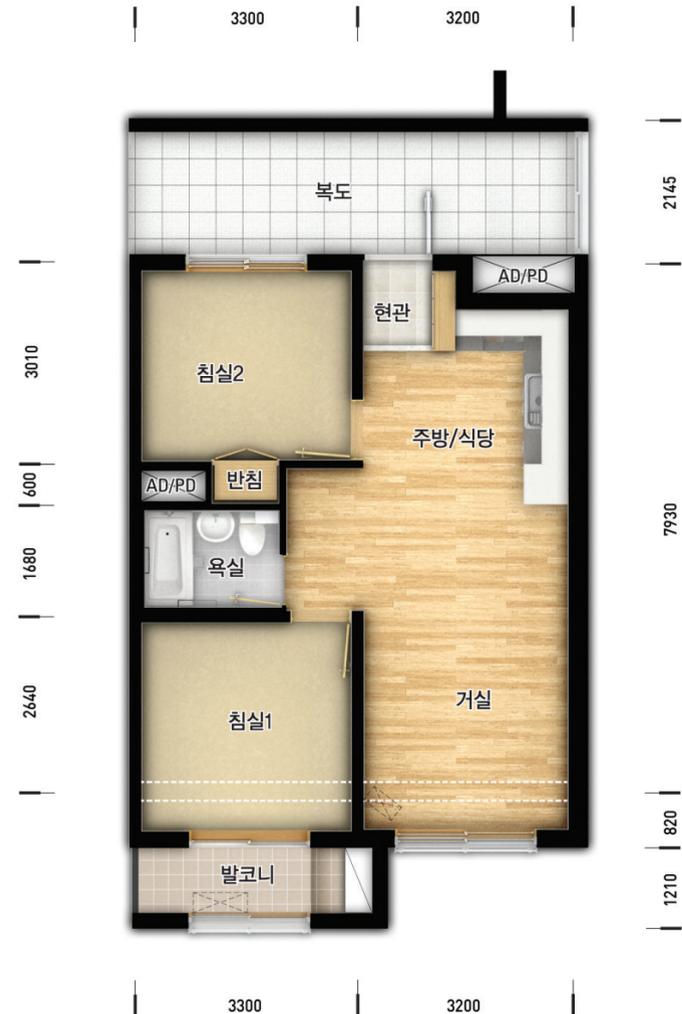
전용면적	46.4200 m ²
주거공용면적	23.5301 m ²
공급면적	69.9501 m ²
기타공용면적	2.9079 m ²
지하주차장면적	15.5261 m ²
계약면적	88.3841 m ²

실별면적

거실	7.75 m ²
침실 1	8.00 m ²
침실 2	9.72 m ²
주방/식당	15.99 m ²
욕실	3.40 m ²
현관	1.56 m ²
계	46.42 m ²

발코니면적

발코니	9.74 m ²
-----	---------------------



- 본 팸플릿에 표시된 평면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면적 및 마감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팸플릿(평면도)에 표시된 복도의 형태는 일부 타입에 국한된 것이며, 복도의 형태(너비)는 타입별(판상형, 탑상형 등)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치수는 이해를 돕기위한 참고수치입니다.(평면도상의 수치는 벽체중심선 기준이며 발코니는 벽체외부 끝선 기준임)

51형

A1블록 70호

A2블록 108호

세대면적

전용면적	51.5700 m ²
주거공용면적	26.0297 m ²
공급면적	77.5997 m ²
기타공용면적	3.5443 m ²
지하주차장면적	16.9863 m ²
계약면적	98.1303 m ²

실별면적

거실	9.86 m ²
침실 1	9.57 m ²
침실 2	9.98 m ²
주방/식당	17.00 m ²
욕실	3.40 m ²
현관	1.76 m ²
계	51.57 m ²

발코니면적

발코니	10.32 m ²
-----	----------------------

세대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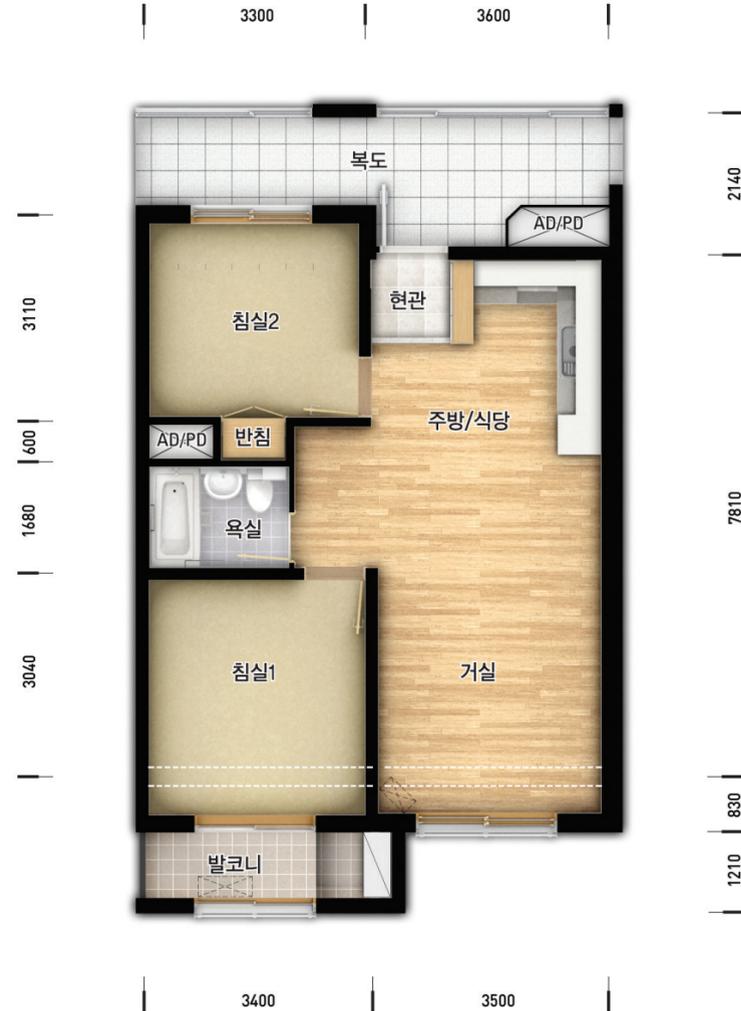
전용면적	51.5700 m ²
주거공용면적	26.1406 m ²
공급면적	77.7106 m ²
기타공용면적	3.2306 m ²
지하주차장면적	17.2486 m ²
계약면적	98.1898 m ²

실별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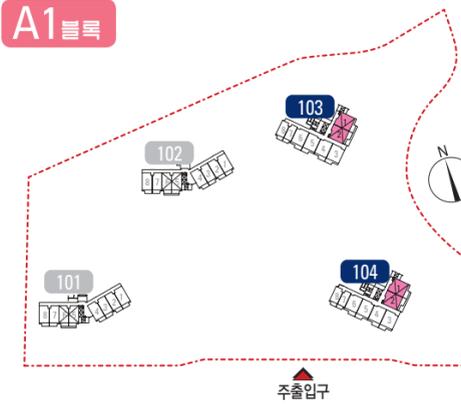
거실	9.86 m ²
침실 1	9.57 m ²
침실 2	9.98 m ²
주방/식당	17.00 m ²
욕실	3.40 m ²
현관	1.76 m ²
계	51.57 m ²

발코니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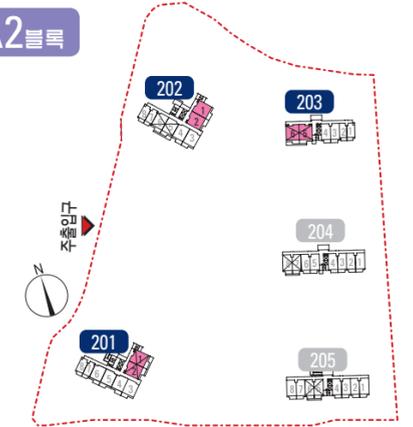
발코니	10.32 m ²
-----	----------------------



A1블록



A2블록



- 본 팸플릿에 표시된 평면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면적 및 마감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팸플릿(평면도)에 표시된 벽도의 형태는 일부 타입에 국한된 것이며, 벽도의 형태(너비)는 타입별(판상형, 탑상형 등)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치수는 이해를 돕기위한 참고수치입니다.(평면도상의 수치는 벽체중심선 기준이며 발코니는 벽체외부 끝선 기준임)

주요마감재 시설내역

구분	항목	A1/A2블록 시설내역	비고
현관	현관도어록	레버형	
	신발장	HPM마감	
	현관바닥	자기질타일	
	현관등	센서등	
거실	비디오폰	7인치칼라 LCD	
	거실바닥재	PVC마루	
	거실등	FPL 32W	
	거실벽지	실크벽지	천장·발포벽지
주방	싱크대	상판 : BMC 문짝 : HPM	
	개수대	언더싱크용, 스텐망, 수세미망	
	레인지후드	디럭스형	
	주방싱크수전	대불이측면 개폐형	
	주방바닥재	PVC마루	
	주방타일	도기질타일	
침실	침실바닥재	룻카펫	
	침실벽지	실크벽지	천장·발포벽지
	침실문짝	합성수지	
	창호	합성수지	
욕실	욕조	아크릴급	UBR
	세면기	도기세면기	
	양변기	준원피스양변기	
	욕조수전	니켈크롬도장	
	샤워수전	니켈크롬도장	
	세면기수전	싱글레버, 원출형	
	욕실타일	벽·도기질타일 바닥·자기질타일	
발코니	발코니샷시	합성수지	
	세탁수전	스프레이건+세탁수전겸용 2구형 가로꼭지(냉수) 2구형 가로꼭지(온수)	
기타/ 정보통신	위성TV수신시스템	설치	
	정보통신	설치	
	CCTV시스템	설치	

화성향남2 A1, A2 블록 국민임대 1,248호 입주자 모집공고 (2013. 7. 19)

■ 인터넷으로 접수하시면 편리하고 기다리시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 인터넷 접수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고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해당자격 및 요건을 확인하신 후 본인의 해당날짜에 신청바랍니다.

1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블록	공급형별 (㎡)	공급호수	세대당 계약면적(㎡)				임대조건(천원)				입주 예정월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 공용면적	합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	잔금		
A1	26	78	26.55	13.4010	10.5698	50.5208	8,300	1,660	6,640	85	2014.12
	36	240	36.77	18.5595	14.6385	69.9680	12,000	2,400	9,600	117	
	46	156	46.42	23.4303	18.4802	88.3305	19,000	3,800	15,200	195	
	51	70	51.57	26.0297	20.5306	98.1303	23,800	4,760	19,040	243	
A2	26	118	26.55	13.4581	10.5432	50.5513	8,300	1,660	6,640	85	
	36	322	36.77	18.6385	14.6018	70.0103	12,000	2,400	9,600	117	
	46	156	46.42	23.5301	18.4340	88.3841	19,000	3,800	15,200	195	
	51	108	51.57	26.1406	20.4792	98.1898	23,800	4,760	19,040	243	

- ※ 단지별, 공급형별로 구분하여 신청접수를 받으며, 동호는 컴퓨터 무작위 추첨하며 변경 불가함.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 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임.
- ※ 주택의 건설위치는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상신리, 방축리 일원 화성향남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 A2 블록임.
- ※ 위 주택은 벽식구조, 경사지붕, 복도식으로 건설되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고 분양전환하지 않는 임대주택임.
- ※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 ※ 위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적용되는 금액이며, 동별·층별·항별 차등이 없으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경우 계약 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함.
- ※ 입주지정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전환보증금(계약자의 선택사항) 납부가 가능하며, 향후 입주안내문을 통해 별도 안내예정임.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4항 철거민이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할증부과함

기준소득 초과비율	10%이하	10%초과 30%이하	30%초과
임대조건 할증비율	10%	20%	40%

2 신청자격 (2013. 7. 19 현재,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자

- ① '무주택세대주'인 자
 -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를 제외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 ※ '해당세대' 및 '가구원'이라 함은 세대주(신청자) 본인과 세대원을 말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26·36형)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또한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26·36·46형)까지 신청 가능
 - ※ 소년·소년가정으로서 시장 등의 추천을 받은 자, 가정폭력피해자·성폭력피해자·범죄피해자 중 여성가족부장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하며,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무주택, 소득, 자산요건도 제외.
 - ※ '임신 중인 태아'의 자녀인정 범위 : 가구원수(공공규칙 제32조 제1항),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우선공급(공공규칙 제32조 제6항), 부양가족수 및 미성년 자녀수(공공규칙 제32조 제12항)에 적용하며, 다태아의 경우 모두 자녀로 인정(임신사실 확인 : 임신진단서)
- ② 아래의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	참고사항
3인 이하	3,144,650원 이하	*최측 월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금액임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월평균소득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4인	3,512,460원 이하	
5인 이상	3,688,050원 이하	

※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주와 세대원(만19세 이상) 전원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세부내역 별첨첨)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③ 아래의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부동산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지분가액만 소유한 것으로 봄, 단, 동일세대원간 지분공유의 경우 지분합계액으로 계산)

ㄱ.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 토지가액은 소유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으로,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산정함,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농지원부상 농임입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적용대상 토지에서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ㄴ. 자동차가액(현재가치 기준) 2,464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며,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를 차감한 금액으로 함.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3 유형별 공급대상 및 선정기준

우선공급 대상자

구 분	신청자격
사업지구 철거민 (주택공급규칙 제32조 제4항)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한 (단, 해당순위 접수신청일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함)
장애인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5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 (부양여부는 세대주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②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인 경우 포함) 단, 50㎡미만 주택은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되 장애등급이 높은 자, 배정 높은 자, 추천의 순서로 입주자 선정함 ③ 「재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재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임주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북한이탈주민 ⑤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 제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청에서 「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⑥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⑦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⑧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⑨ 만65세 이상 고령자 ⑩ 「아동복지법」제2조제7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⑪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⑫ 「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 제1항 제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⑬ 「관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4에 따른 단광근로자이거나 단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단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⑭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⑮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남북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중 통일부에서 남북피해자로 확인된 자 ⑯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자녀 이상가구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6항)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태아 포함)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 단, 이혼·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7항)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③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④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8항)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영구임대주택 계약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9항)	안전행정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임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받은 자
신혼부부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10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①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면서 ②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③ 혼인기간 중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양포함)해서 자녀가 있으며, ④ 신청하는 주택이 전용 50㎡ 이상 주택인 경우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무주택 세대주인 자 ■ 입주자 선정순위 ① 순위(1순위-2순위), ② 거주지역(화성시 거주자 → 그외 수도권), ③ 자녀수가 많은 자, ④ 추천 순으로 선정 ※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내,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초과 5년내 ※ 단, 50㎡미만 주택은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며, 혼인기간은 혼인관계증명서상의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 ■ 자녀수 선정방법 등 ※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신청자 및 현재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를 포함하고 재혼의 혼인기간중 출산(임신 및 임양포함)한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신청불가. ※ 다태아의 경우 모두 자녀로 인정(임신사실 확인 :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임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정기간 개시일 전 · 후로 출산 및 임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을 취소함 - 출산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단, 입주자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자정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임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자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임양관계증명서

● 선정기준

구 분	입주자선정 방법												
26·36·46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소득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 배점이 높은 자(배점기준표 참조), 3.배점이 같은 경우 추천 <table border="1"> <thead> <tr> <th>가구원수</th> <th>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th> <th>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th> </tr> </thead> <tbody> <tr> <td>3인이하</td> <td>2,246,180원</td> <td>3,144,650원</td> </tr> <tr> <td>4인</td> <td>2,508,900원</td> <td>3,512,460원</td> </tr> <tr> <td>5인이상</td> <td>2,634,320원</td> <td>3,688,050원</td> </tr> </tbody> </table>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3인이하	2,246,180원	3,144,650원	4인	2,508,900원	3,512,460원	5인이상	2,634,320원	3,688,050원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3인이하	2,246,180원	3,144,650원											
4인	2,508,900원	3,512,460원											
5인이상	2,634,320원	3,688,050원											
51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점이 높은자(배점기준표 참조) 2.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천 												

※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신혼부부 우선공급대상자는 별도 기준으로 선정

일반공급

● 순위 및 선정기준

구 분	입주자선정 방법
26·36·46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인과 세대원 소득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위 '우선공급 선정기준'의 소득기준표 참조)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충족하여야 함)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 3.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미성년자녀(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태아포함) 3명이상인 자, 배점기준표상 배점이 높은 자,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천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51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래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충족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2.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미성년자녀(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태아포함) 3명이상인 자, 화성시 거주자, 배점기준표상 배점이 높은 자,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천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공급유형별 배정호수

블록	공급대상			우선공급																일반공급 (357)
	형별 (㎡)	계	소계 (891)	철거민	65세 이상 고령자	노부모 부양	장애인	장기복무제대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비정규직근로자	가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정, 아동위탁가정, 범죄피해자, 단광근로자, 해외거주재외동포, 남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	3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 등	영구임대거주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신혼부부		
A1	26	78	53		2	1	3	1	1	1	1	2	1	7	7	2	1	23	25	
	36	240	172	1	7	4	11	2	2	2	4	7	4	23	23	7	4	71	68	
	46	156	110		4	3	7	1	1	1	3	4	3	15	15	4	3	46	46	
	51	70	51		2	1	3	1	1	1	1	2	1	7	7	2	1	21	19	
A2	26	118	82		3	2	5	1	1	1	2	3	2	11	11	3	2	35	36	
	36	322	236		9	6	16	3	3	3	6	9	6	32	32	9	6	96	86	
	46	156	110		4	3	7	1	1	1	3	4	3	15	15	4	3	46	46	
	51	108	77		3	2	5	1	1	1	2	3	2	10	10	3	2	32	31	

※ 공급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 상기표에서 배정호수가 부여된 단위별로 경쟁하여 당첨자를 선정함.
 ※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단, 장기복무제대군인,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순위에 의한.
 ※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호수에 미달하여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그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부적격자의 통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배점기준표			
구 분	3점	2점	1점
① 세대주 나이	만50세이상	만40세이상	만30세이상
② 부양가족수(세대주 본인 제외, 태아 포함)	3인이상	2인	1인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화성시) 거주기간	5년이상	3년이상 5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④ 미성년자녀수(모집공고일현재임신중태아포함)	3자녀이상	2자녀	-
⑤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계속 부양하는 자 : 3점 단, 부양여부는 세대주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⑥ 중소기업 중 제조업(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⑦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⑧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가. 60회이상 : 3점, 나. 48회이상 60회미만 : 2점, 다. 36회이상 48회미만 : 1점			
⑨ 사회취약계층 : 3점 ※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인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피해자,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고자 하는 자로서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중 청약저축가입자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최근 계약일 적용

※ ⑤, ⑥, ⑨의 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5항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 미성년 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부양가족이라 함은 세대주(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세대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형제·자매(만9세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주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부양가족을 포함(단,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신고 완료,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국내거소신고증의 거소지(체류지)와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4 접수일정 및 입주자 선정절차

구 분	월평균소득	순위	신청접수 일정		신청장소
			일자	시간	
26·36·46형	3,144,650이하 (단, 4인 가구 : 3,512,460원이하 5인이상 가구 : 3,688,050원이하)	우선공급	2013. 8. 6(화)	오전10시 ~ 오후5시	1. 인터넷 접수시 :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2. 방문접수시 : 화성향남1한우물마을6단지관리소 (경기 화성시 향남읍 행정남로 99-16)
	2,246,180원이하 (단, 4인 가구 : 2,508,900원 이하 5인이상 가구 : 2,634,320원 이하)	일반공급 1순위	2013. 8. 7(수)		
		일반공급 2순위	2013. 8. 8(목)		
	일반공급 3순위	2013. 8. 9(금)			
51형	3,144,650이하 (단, 4인 가구 : 3,512,460원이하 5인이상 가구 : 3,688,050원이하)	일반공급 1,2,3순위	2013. 8.12(월)	오전10시 ~ 오후5시	1. 인터넷 접수시 :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2. 방문접수시 : 화성향남1한우물마을6단지관리소 (경기 화성시 향남읍 행정남로 99-16)
	3,144,650이하 (단, 4인 가구 : 3,512,460원이하 5인이상 가구 : 3,688,050원이하)	우선공급	2013. 8. 6(화)		
		일반공급 1순위	2013. 8. 7(수)		
		일반공급 2순위	2013. 8. 8(목)		
일반공급 3순위	2013. 8. 9(금)				

※ 기관추천대상자(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제외동포)는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접수가 불가함.
 ※ 인터넷·방문신청접수 공히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 및 시간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모집호수(건설호수+예비입주자(건설호수의 40%내외))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음. (후순위 접수여부는 선순위 접수마감일 오후 8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 신청순위별 신청일의 해당시간(오전10시~오후5시)에만 가능하므로 해당 신청일(시간)에 세대주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 대리신청할 경우는 하단의 신청서류 외에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을 추가 제출하여야 함.

인터넷을 통한 접수방법

신청순서 홈페이지 접속(http://www.lh.or.kr) → 분양·임대 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에서 아파트청약 바로가기 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 국민임대 → 지구조회 → 주택현조회 → 유의사항 및 우선/일반공급 선택 → 순위 선택 → 서약서 작성 → 배점표 작성 → 신청서 작성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전자공인인증서(반드시 세대주의 개인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해야 함.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선선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함.
- 순위별 청약신청 일정이 다르므로,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소득·배점항목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입적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표등본 등 해당 신청서류를 발급받아 해당자격 및 요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람. 특히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람.
- 인터넷 접수자는 신청(입력)한 내용과 제출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누락 등 착오입력,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첨(예비) 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으므로 해당서류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신청(입력)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을 통해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인터넷 신청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일(2013.9.13(금), 오전 10시~오후 5시)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할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 대상자에서 제외됨.
- 제출서류 확인결과 서류내용이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예비) 대상자 제외 등]을 받게 되며, 서류제출대상자는 우리 공사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제출 서류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의해 당첨자(예비입주자)를 확정함.
 ※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 시간은 오전10시~오후5시이며, 마감시간까지 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신청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함.
 - 인터넷 청약신청 1~2일 전 청약신청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속하기"로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사용 바람.

입주자 선정절차



※ 신청자(세대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한.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함.
 ※ 소득의 경우는 지자체, 자산의 경우에는 우리공사에서 소명자료에 대해 심사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함.

5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2013. 7.19 이후 발급분 제출)

- 공통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1통: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해지역 거주기간 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및 전입일/변동일 모두 표시되도록 서류발급 바람.
 ※배우자가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제출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기능),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여권사본,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별첨된 동의서를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미리 서명하여 신청접수 시 제출
 ※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해당자 추가제출서류
 - 국민주택공급신청서 또는 순위확인서 1통 : 51형 1,2순위 신청자 또는 36회 이상 납입하여 배점을 받고자 하는 자
 * 청약저축 가입은행 또는 온라인(http://www.apl2you.com) 발급 가능
 - 주민등록표초본 1통 : 화성시 거주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화성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화성시 거주자로서 거주기간이 각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에 따른 가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있음)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표초본"추가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미성년 자녀의 수가 2인 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임신 중인 경우)
 -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 1통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50㎡ 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와 장애인 우선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만 제출

관련항목	유의사항
학생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는 하급초등학교(가칭), 중학교 하급중학교(가칭)에서 학생수용예정이며 2015. 3월 개교예정임 학생수용 및 학교신설계획은 교육지원청에서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으로 교육재정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2개월전에 보내드리는 입주안내문을 통해 확인바람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에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림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에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차,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됨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해야 함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 등은 해당 은행과 상담하시기 바람. 아울러 동 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분은 입주시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여야 함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 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65세 이상 노인, 3급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특수층(층) 배정신청이 가능하며, 계약체결기간(11.26~11.28)내 신청자에 한하여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 드림 하차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음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함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색대상 :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취득·처분 기준일 : ①,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③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의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소재 주택 중 현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아래 주택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 숙소용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인 주택,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⑥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의 소유주택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 멸실,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주택 ⑧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 확인원,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람

노약자·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중 만 65세이상 노인, 3급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해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공사현장 및 공사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편의 시설은 설치(신청)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 분	설치내용	제공대상
현관	마루감을 경사로 설치	지체장애인
욕실	바닥단차 제거, 출입문 규격확대 및 개폐방향 변경, 좌식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고령자, 지체장애인
	높낮이조절 세면기	지체장애인
주방	가스밸브 높이조정, 좌식싱크대(물버림대)	지체장애인
거실	비디오폰 높이조정, 아간센서등	지체장애인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주동,통로 유도시설	음성유도신호기	시각장애인

- 대상자별로 제공될수 있는 편의시설내역, 신청서등은 계약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장애인수첩 사본 등
- 신청기간 : 계약체결기간(2013. 11. 26~11. 28)내

문의처

☎ LH본사 콜센터 : 1600-1004

팜플릿 배부처

■ LH 경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8 3층)
 화성향남1 한우물마을 6단지 관리소 (화성시 향남읍 행정남로 99-16)

(별첨)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장애인고용공단,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군인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훈처 등

